

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
번호 2637

제출년월일 : 2015년5월) 일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「주민등록법」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,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동 조례는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해 주는 조례로 구청장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사무 외에 위임하여 처리할 사무가 없어 구청장 삭제(안 제1조)
- 나.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단서 조항은 중복 조문으로 삭제(안 제2조)
- 다. 주민등록법 개정 내용 반영(안 제2조제2호)
- 라. 위임 사무가 없는 구청장 삭제(안 제3조제1항, 제2항)

개정조례안 :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- 주민등록법 제29조, 제30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있음

- 예고기간 : 2015. 3. 9. ~ 3. 30.
- 예고결과 : 1건(반영 1)

제출의견	반영여부	검토의견	비고
○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해당 조례에서 삭제	반영	○ 제출자 의견 반영	

기타참고자료 : 붙임(방침결제 사본)

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” 를 “안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의거 시장이” 를 “따라 안산시장이” 로, “권한중” 을 “권한 중” 으로, “구청장·동장” 을 “동장” 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” 를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” 로, “기타 사무는 구청장·동장” 을 “그 밖의 사무는 동장” 으로 하고, 단서는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

제3조제1항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2조에 따라” 로, “구청장·동장” 을 “동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구청장·동장” 을 “동장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민원여권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민원여권과 박 경 열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민원행정계장 이 강 혁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윤 인 숙 (행정 2130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구청장·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구청장·동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단, 주민등록등·초본의 열람 및 발급 사무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시장·구청장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. (생략) <p>제3조(지휘 감독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구청장·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·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안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따라 안산시장----- ----- 권한 중 ----- 동장----- -----.</p> <p>제2조(권한의 위임) <u>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-----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.</u></p> <p><삭제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. (현행과 같음) <p>제3조(지휘 감독) ①제2조에 따라 ----- 동장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----- 동장----- ----- -----.</p>

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637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. 5. 21.

제안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, 시장이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에서 위 사무를 제외함.

□ 주요골자

- 제2조제4호 신설에 따라 주민등록법이 조문에 반복 사용되므로, 같은 조 제2호에서 “주민등록법”을 “주민등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으로 수정함.(안 제2조제2호)
- 시장이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지 않는 사무에 <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>을 추가함. (제2조4호 신설)

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호 중 “주민등록법”을 “주민등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로 수정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조(권한의 위임) <u>시장이</u>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구청장·동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단, 주민등록등·초본의 열람 및 발급사무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시장·구청장도 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2조(권한의 위임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-----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제2조(권한의 위임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주민등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-----</p> <p>-----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</p>